

## 디자인보호법 물품구분표상 B군 의복 및 신변용품 분류체계 개선안

조 경 숙 · 조 재 신<sup>+</sup>

성균관대학교 예술대학 의상학과 교수 · 전남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부교수<sup>+</sup>

###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Class B Articles of Clothing and Personal Belongings Design Classification under the Korean Design Protection Act

Kyeong Sook Cho · Jae Shin Jo<sup>+</sup>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Innovation Center for Engineering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sup>+</sup>

(투고일: 2014. 3. 24, 심사(수정)일: 2014. 4. 21, 게재확정일: 2014. 6. 7)

#### ABSTRACT

The *Design Protection Act* of Korea classifies industrial designs into examined-based and unexamined-based articles. For design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under the *DPA*, applicable product for the design needs to be chosen in order for it to be registered. Clothing and personal belongings under class B in the classification list are subject to unexamined-based articles. A sound and logical classification system will lead to higher administrative efficiency as well as assurance of more convenience for the system users. This paper examines the suitability of the design classification for clothing and personal belongings and purposes to suggest improvements.

Key words: articles of clothing and personal belongs(의복 및 신변용품),  
design classification(디자인 분류), *Design Protection Act*(디자인보호법),  
design registration after partial examination(디자인일부심사등록)

## I.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의복류를 비롯한 패션제품과 같은 제품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 장치는 디자인보호법이다.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 은 출원 후 심사를 거쳐 등록을 결정하고 독점 배타 권인 디자인권을 발생시켜 재산권으로서 인정하는 심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패션제품과 같이 유행 주기가 짧은 창작 디자인이 신속히 권리 화 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998년부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구법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현행 디 자인보호법상(시행 2014. 7. 1., 법률 제11848호, 2013. 5. 28., 전부개정) 일부심사대상 물품은 산업통상자원부 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제한하고 있다(제37조 제4항).

일부심사등록제도는 일부 심사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조속한 시일 내에 창작자의 실질적인 권리가 보 장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일부심사대상 디자인의 경우 디자인 출원 시점 에서 등록 결정 통지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2~3개월 내로 일반 심사 대상 디자인의 처리기간 9개월보다 훨씬 단축되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권리의 조기 확보가 실현됨으로써 디자인권자의 입장에서는 안정 된 디자인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디자인일 부심사등록제도에 문제가 없지 않다. 심사기간의 단 축을 위해서 심사 중 일부가 생략됨으로 인해 제도의 도입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현상들이 지적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종윤<sup>1)</sup>은 일부심사제 도의 도입으로 흠결이 있는 부실한 디자인에 대해서 도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더욱이, 일부심사등록디자인에 대해 심사등록디자인과 동일 한 독점 배타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모순이라 지 적하면서 제도의 폐지를 포함한 법적, 제도적 검토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특허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1998년 제도가 도입된 첫 해 출원된 일부 심사출원이 3,662건(총 출원 25,155건)에서 최근 2013년에는 29,647건(총 출

원 68,036건)으로 전체 디자인 출원건수 대비 일부심 사 출원율은 14.6%에서 43.6%로 증가하였다. 이는 일부심사등록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시점에서 제도의 폐지는 또 다 른 혼란을 야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그 간의 시행착오를 충분히 검토해 보고 이 제도가 갖는 구조적 문제점을 잘 분석하여 안정 적인 제도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사회적 혼란과 경 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제도 개선의 노력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제도에 내포된 논리적 결함을 개선하는 것일텐데, 현행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에서의 논리적 결함은 무 엇보다도 대상 물품의 적정성에 대한 정당성과 분류 체계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가령,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유행성이 강하지 않은 물 품이 일부심사제도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시장여건 및 기술변화에 따라 추가 지정이 필요한 물품이 시의적절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물품이 일관된 논리에 따라 분류되지 못하고 있다. 일부심사 제도의 도입 이후 2006년 특허청<sup>2)</sup>은 제도 개선을 위 한 보고서에서 대상물품 선정 및 물품분류체계상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재조정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후 몇 차례에 걸친 법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함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 도 대상 물품분류체계의 적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을 의복과 패션제품 디자인을 포함하는 B군 "의복 및 신변용품 등"류로 제한하고자 하는데, B군 물품구분표의 점검 필요성 은 B군이 디자인권 제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위 상에서 찾을 수 있다. 즉, B군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제도 대상 물품분류 중 물품류가 가장 많은 군으로, 특허청의 통계<sup>3)</sup>를 토대로 물품군별 출원 추이를 분 석해 보면 2012년에는 전체 디자인 출원건수 대비 B 군의 구성비가 13.1%로 D군 주택설비용품의 14.0% 다음으로 높고, 전체 대비 B군 출원의 구성비는 2003 년 7위에서 2012년 2위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는 등 제도의 이용율이 매우 높은 군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B군 “의복 및 신변용품 등”류의 물품분류체계에 대한 패션 학계 및 업계의 전문성 있는 검토 및 연구가 전무하고, 의견이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상기 2006년 특허청 보고서와 같이 법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어서 해당 군에 속한 물품을 다루는 업계의 관점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연구의 취지에 따라 내용의 전개는 디자인일부심사제도상에서 의류 및 패션제품을 포괄하는 B군의 분류체계를 점검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궁극적으로 의류 및 패션제품 디자인물품분류체계의 적합성 제고를 도모하는 본 연구는 디자인의 법적 권리 확보 조기화와 행정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설문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선행 문헌 연구를 통해 국내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물품분류와 의류 및 패션제품 분류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분류체계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에 관련된 논의들을 비교·검토함으로써 연구의 객관성 제고를 꾀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하고자 하는 B군 디자인물품분류체계의 개선안은 해당 분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의견을 종합하여 집계하는 델파이(Delphi) 기법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에 참여하는 전문가 집단은 전·현직 특허청 디자인분류 정책담당자, 심사관, 심판관, 변리사들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디자인물품분류에 대한 다각적인 관점을 종합, 반영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신뢰를 높이

고자 하였다. 설문 조사는 2013. 10. 28~11. 15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총 20명의 전문가에게 배포한 설문지 중 회신된 7부의 답변에 기초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 내용은 응답자의 기본 인적 사항에 관한 문항, 디자인물품분류체계 운영 전망에 관한 문항, 그리고 현행 디자인물품분류표상 의복 및 신변용품류 B군 물품분류체계에서 발견되어지는 논리적 결함을 개선하기 위한 본 연구자들의 ‘검토안’에 찬성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표 1).

검토안의 구성은 선행 연구들의 제안을 참고로 본 연구자들의 패션분야와 특허업무 실무에서의 전문성에 기초하여 현행 물품분류체계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파악한 후 설문지에 제시한 것으로, 각 검토안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연구 결과에 찬성 점수로 제시하였다. 찬성 점수가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디자인물품분류 B군 분류체계 ‘개선안’으로 제시하였다.

## III. 디자인물품분류와 B군 의복 및 신변용품류 분류체계

### 1. 디자인 물품분류와 체계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의 등록출원시에 출원 대상 디자인에 적용할 ‘물품’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물품을 선택, 지정하여 디자인을 보호하는 이유는 물품에 화체(化體)되지 않거나 생산되지 않는 디자인은 의미가 없는 실체로 보기 때문이다.<sup>4)</sup> 보호 대상 물품의 코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지정하는 시행규칙상의 디자인 물품구분표에 제시하

<표 1> 설문지의 구성

내용(문항수)	비고
조사 대상자의 기본 인적 사항(3)	
디자인물품분류체계 운영 전망에 대한 의견(3)	
B군 물품분류체계 검토안(40): B1 의복류(28), B2 복식용품류(2), B3 신변용품류(4), B4 가방 또는 휴대용 지갑류(3), B5 신발류(2), B9 의복 및 신변용품, 범용부품 및 부속품(1)	찬성 점수 1~5(매우 반대 1, 매우 찬성 5)

고 있는데, 특허청은 2011년 우리나라가 로카르노협정(Locarno Agreement)<sup>5)</sup>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산업디자인의 물품분류에 대한 국제 통일화 추세에 부응하고자 2014년 7월부터 로카르노분류를 시행하여 우리나라의 물품분류와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국내 디자인물품분류의 체계는 물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해당 분류 내 물품의 동일성 및 유사성에 관한 판단의 기준을 세워 심사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국내 분류 코드 체계는 군분류>대분류>중분류>소분류로 나누고, 군분류의 경우 알파벳 A부터 N까지의 I를 제외한 13개 군으로 소비재적인 물품 분야에서 생산재적인 물품 분야의 순서로 배열하고 있다.<sup>6)</sup> 대분류는 0에서 9까지 한 자리 숫자로 B1, B2, B3 등과 같이 표시하며, 중분류는 대분류를 다시 세분하여 나누고, B1-10, B1-20과 같이 10, 20, 30 등 10의 배수로 구성하나 예외적으로 한 자리 숫자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소분류는 중분류 내 물품을 단위 물품별로 구분하여 5자리 이내의 숫자로 구성하여 해당 분류에 속하는 개별 물품의 명칭들을 예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 분류가 용도에 따른 체계인 반면 로카르노 국제분류는 기능별로 분류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분류에서 일반 장갑과 권투장갑은 '용도'가 다르므로 일반 장갑은 B군 "의복 및 신변용품 등" 아래 B2-51로, 권투장갑의 경우는 E군 "취미오락용품 및 운동경기용품" 아래 격투경기용구를 위한 E3-02 코드로 각각 다른 군으로 따로 분류한다. 반면, 로카르노분류에서는 손에 끼는 '기능'이 동일하므로 같은 코드에 해당하는 02-06(Class 2 Articles of Clothing and Haberdashery, 06 Gloves)류로 분류한다.<sup>7)</sup> 따라서, 기능별로 포괄적으로 분류하는 체계인 로카르노분류는 디자인 컨셉 보호에 효율적이고, 디자인을 확대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물품의 동일·유사판단의 자료로 활용하거나 선행 공지디자인을 조사할 때는 물품의 범위가 확대되므로 불필요한 디자인까지 검색 또는 심사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sup>8)</sup> 이와 같은 이유에서 로카르노분류는 심사에는 부적합한 반면, 한국 분류체계는 심사에 적합하나 디자인의 보호 범위가 작고 오분류의 발생 빈도가 상

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 2. B군 의복 및 신변용품 디자인 분류체계

일부심사대상 물품인 의류 및 패션제품 디자인의 경우는 디자인 물품분류 구분에 관한 고시(특허청 고시 제2012-35)에 따른 물품구분표상 B군 "의복 및 신변용품 등"으로 분류하고, B군은 다시 B1, 2, 3, 4, 5, 6, 7, 9의 하류로 구분한다. 대분류 B1류는 한복, 양복, 민속복, 속옷 등을 포함하는 의복류를, B2류에는 띠를 포함하여 손, 발 및 머리 등을 덮는 복식류, B3류에는 장식 목적으로 신체에 붙이는 신변용품류, B4류에는 가방 또는 휴대용 지갑류, B5류에는 신발과 그 관련 물품류, 그리고 B9류에는 단추, 안전핀, 버클 등과 같은 부속품류를 포함하고 있다(표 2).

현행 국내법상 디자인보호제도는 일부심사대상 물품 대분류 내에 속한 물품은 모두 일부심사로 하고, 심사대상 물품 대분류에 속한 물품은 모두 심사로 처리하는 일원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B군 아래의 의류 및 패션제품에 해당하는 6개 대분류 B1, 2, 3, 4, 5, 9류에 분류된 물품들은 모두 일부심사로, 그 외 B6류 "흡연용구 및 점화기"와 B7류 "화장용구 또는 이용용구"는 심사제로 처리하고 있다.

## 3. B군 물품 분류상의 문제점

2006년 특허청은 일부심사등록 대상 물품의 제조정 방안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보고서에서, 일원화 방식을 유지하는 경우의 분류 전환 조정 대상 물품으로 B군 아래 중분류 [B1-7 생리대용 패드지지대]와 [B1-80 기저귀 및 기저귀커버]는 [C4-40 생리용품]으로, [B4-3 보자기]는 [F4-10 포장지]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sup>9)</sup> 이에 덧붙여, 소분류 <B1-40 포대기><sup>10)</sup>를 <B2-00 기타의 복식품> 또는 <C1-110 침구>로, <B4-1 쇼핑백><sup>11)</sup>은 <F4-40 포장용 포대>로, <B1-60 스타킹, 타이즈><sup>12)</sup>는 <B2-40 양말 등>으로, <B3-30 왓펜><sup>13)</sup>은 [B1-90 의복부품 및 부속품]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sup>14)</sup> 이러한 제안들은 우리나라의 디자인물품분류가 물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물품의 동일·유사 판단에 용이함을 피하고

〈표 2〉 B군 의복 및 신변용품 물품구분표

E군분류코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B 의복 및 신변용품 등	B1 의복	00 기타의 의복	01 보온의
		10 양복 및 한복	10A 한복, 110 외의 또는 상의
		20 외국전통의복	21 아시아전통의복
		30 에이프런	31 에이프런, 32 요리용 덧옷
		40 잠옷	41 파자마, 42 포대기(유아용)
		5 수영복	-
		60 속옷	61 브래지어, 62 언더셔츠
		7 생리용 패드지지대 등	-
		80 기저귀 및 기저귀 커버	81 기저귀커버
		90 의복부품 및 부속품	910 의복용부품, 911 어깨패드
B2 복식품	00 기타의 복식품	010 복대 등, 011 복대	
	10 띠	190 띠부속품, 192 허리끈 등	
	2 의복용벨트	-	
	30 바지멜빵 등	31 양말대님	
	40 양말등	41 양말 및 버선, 41A 양말및버선(변형)	
	50 장갑 등	51 장갑, 51A 장갑(다섯손가락용)	
	60 모자 등	61 모자, 61A(모자(챙 일체형))	
B3 신변용품	00 기타의 신변품	01 열쇠고리, 01A 열쇠고리(비사물형)	
	10 장신구	101 피어싱, 12 장신용 메달	
	20 머리치장품 및 귀장신구	21 헤어피스 등, 22 머리카락치장품	
	30 목장신구 및 가슴치장품	31 목장신구, 31A 목장신구(줄 단원형)	
	40 팔뚝장신구 및 손가락장신구	41 팔뚝장신구, 41A 팔뚝장신구(트임형)	
	5 손수건	-	
	60 안경	60A 안경(렌즈단일형), 60B안경(렌즈복수형)	
	70 부채	72 부채, 790 부채 및 부속품	
80 우산 및 지팡이	81 우산, 83 양산		
B4 가방 또는 휴대용지 갑 등	0 기타의 가방 또는 휴대용지갑	-	
	3 보자기	-	
	4 가방 또는 휴대용지갑	4A 가방 또는 휴대용지갑(단원형), 4AA 가방 또는 휴대용지갑(덮개형)	
90 가방 또는 휴대용지갑 등 부품 및 부속품	91 배낭용 부품 및 부속품, 92 가방용 손잡이 또는 휴대용 지갑 손잡이		
B5 신발	00 기타의 신발 등	010 구두주걱, 011 다용도형 구두주걱	
	10 구두 또는 운동화	11 남성화 또는 공용화, 11A 남성화 또는 공용화(단화)	
	20 운동용 특수화	210 스키화, 219 스키화 부품 및 부속품	
	50 샌들	50A 샌들(스트랩형), 50B샌들(앞트임형)	
	60 발가락 샌들	69 발가락 샌들 부품	
	70 나막신	790 나막신부품 및 부속품, 791 코신	
	8 슬리퍼 및 실내화	8A 슬리퍼 및 실내화(사물형), 8AA 슬리퍼 및 실내화(앞, 뒤막힘형)	
90 신발등 부품 및 부속품	910 신발부품, 911 구두갑피		
B9 의복 및 신변용품, 범용부품 및 부속품	0 기타의 의복 및 신변품	-	
	10 범용부품 및 부속품	110 의복 및 신변용품용 멈춤 금속구, 111 의복용 단추	
	20 의복 및 신변품 부속품	21 안전핀	

주1: 소분류가 다수인 경우 2개 코드까지만 예시함.

주2: 심사대상 B6, B7류는 본 표에서 제외함.

주3: 이하 군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물품은 각각 E코드, {}, [], <>안에 표시함.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무관한 용도의 물품들이 동 분류 내로 흡수, 분류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들은 2009년과 2011년에 개정된 물품분류에서도 여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상기 연구에서 지적한바 외에도, 예를 들어, 디자인 물품의 구분표상에서 [B9-10 의복 및 신변용품 부품]하의 소분류 <B9-130 의복 및 신변용품 연결금속구>에 제시된 “자동차 관련용 시트벨트 연결구, 자동차용 안전벨트 버클, 작업벨트용 버클”은 용도가 의복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B군에 포함되어 있어 코드 내 개별 물품들 간 용도상의 유사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또, <B1-914 의복용 장신구>에 개별 물품 명칭으로 제시된 “골프스윙조절패치”는 용도상 장신구의 일종으로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현행 디자인물품 분류체계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동일 체계 내에 비유사물품들이 포함되어 ‘용도별 분류’라는 체계의 논리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 분류체계상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으로 둘째, 개별 물품 또는 분류 명칭이 부적합하여 물품의 용도, 기능, 형태 인지가 어려운 경우를 들 수 있다. 가령, <B1-9130 의복용 미끄럼방지구>와 <B1-9131 인사이드벨트>의 소분류명이 해당 분류나 분류 내 속한 물품의 기능 및 형태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제도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대분류 {B1 의복}은 [B1-00 기타의 의복], [B1-10 양복 및 한복], [B1-20 외국전통의복] 등을 포함한 10개 중분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분류만으로는 시장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령, 현대인들의 스포츠, 레저 활동 증가로 스포츠, 아웃도어웨어 관련 물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 분류표에서는 “수영복”만 개별 중분류로 구분하고 있어 거래 시장의 변화와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또, 현 분류체계에서는 [B5-10 구두 또는 운동화]로 “구두”와 “운동화”를 동일한 중분류 내에 분류하고 있는데, 이 두 아이템의 디자인은 서로 독립적이고, 현대인들의 활동 범위와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요구되는 신발의 종류 및 디자인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최근 B5류 신발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

할 때, 서로 별개의 중분류로 분리하여 세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성별을 구분한 분류 명칭 또는 개별 물품 명칭의 경우 그 정당성에 논리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가령, <B1-65 코르셋 등>에 제시된 “여성용 보디 슈트”에서와 같이 보디 슈트를 ‘여성용’으로 제한하여 표현하면, 구분표상에서 남성용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또, 현재의 트렌드는 남성용 신체 보정 속옷도 다양하게 출시·소비되고 있어 보디 슈트가 여성용으로만 제한된다고 보기도 어려워므로, 이러한 경우 개별 물품명에서 성별 표시의 삭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B5 신발}하의 <B5-11, 11AA, 11AB, 11AC, 11AD, 11B, 11BA, 11BB>까지에 해당하는 소분류명에서 “남성화 또는 공용화”를 분류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B5-12, 12A, 12B>에서는 “여성화”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남성용과 여성용의 디자인이 독립적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유니섹스 스타일의 트렌드에 따라 남성용, 여성용 신발 디자인이 유사할 수도 있고, 동일 디자인을 남성용, 여성용에 독립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으므로 분류명과 개별 물품 명칭에 성별을 구분하는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논리와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업계 용어와 거리가 먼 용어들이 분류 명칭이나 개별 물품명에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B1-912 의류용 표시구>에서 “의류용 표시구”는 각각 개정 전의 명칭 “직네임”으로부터 변경된 것으로 업계에서 라벨지로 언급되는 물품을 말한다. 이는 지난 2011년 개정안에서 출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자 또는 일본식으로 표현된 물품 명칭을 한글화하는 차원에서 변경된 것이나, 변경된 새 물품명조차도 업계에서 통용되는 용어와 거리가 멀고, 물품의 형태와 기능이 무엇인지 인지하기 어려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B3-36 왓펜>에서 “의류용 표딱지” 역시 업계의 용어와는 거리가 있어 변경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기타 사항으로, <B1-115 잠바>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비표준어가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중복되는 표현의 문제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대분류

〈B4-94 가방용자물쇠 또는 휴대용 지갑 자물쇠〉는 “가방용파스너(FASTNER)”와 “가방체결구”를 각각 해당 개별 물품 명칭으로 예시하고 있는데, ‘파스너(FASTNER)’는 ‘체결구’의 영어식 표현이므로 중복 표현을 피하여 언어 사용에 있어 경제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 특허청<sup>15)</sup>의 물품 재조정안에서는 〈B2-50 토시〉, [B3-5 손수건], 〈B3-30 머플러, 스카프〉<sup>16)</sup>를 [C1-7 수건 등] 또는 [M1-100 직물지 등]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본 연구는 이들 물품이 C군의 “수건”과는 달리 패션성이 높은 개인 신변품이므로 현행대로 B군에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물품은 제한된 크기의 2차원적 평면 안에서 디자인적 구성이 모두 제시되어야 하는 물품으로 모티브의 반복으로 패턴을 이루어 디자인되는 M군의 일반 직물지 디자인과도 구분되어야 한다. 가령, 손수건의 경우, 제한된 크기 안에 가장자리를 그 외 부분과 구분하여 중요한 디자인 구성 요소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모티브와 패턴의 반복으로 구성되는 M군 직물지 디자인과 차별화하여 B군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발견되는 디자인물품 분류체계상의 합리성 결여는 출원인과 심사관 등 이에 직접 관련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선행 디자인 조사나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연구 활동을 하는 이용자들에게도 혼란을 초래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행정상의 비효율과 국가 통계 자료의 산출에도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함은 제도의 이용자들은 물론, 학자와 행정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검토를 통해 정책적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IV. 연구 결과

설문 조사에 참여한 조사 대상자들의 구성은 전·현직 특허청 내 디자인분류 담당자 2명, 디자인 심사관 1명, 디자인 심판관 1명, 변리사 3명으로 모두 7명의 디자인 전문가들이다. 이들의 해당 실무 평균 근무 기간은 10년 9개월로 나타났다.

이들 전문가들은 현행 디자인물품분류체계에 대해, 현재는 내년 로카르노분류와의 혼용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지만 여전히 현행 국내 디자인물품분류표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개선이 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1)용도보다 기능 위주로 디자인 컨셉의 보호가 용이해 질 수 있어야 하며, 2)시장에서 신규로 창출되는 물품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하고, 3)현실과 맞지 않은 물품 명칭 및 불명확한 명칭과 분류들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2014년 로카르노분류체계의 도입 후 현 한국분류는 어떤 형태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로카르노분류가 주(主), 한국분류가 부(附)의 개념으로 병행사용 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가 5명, 반대로 2명의 전문가들은 한국분류가 주, 로카르노가 부의 개념으로 병행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본 연구자들이 제시한 총 40항목의 B군 물품분류 검토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11개 항목에서 4.0이상의 개선 찬성 점수를 보였고, 16개 질문에서는 찬성 점수 3.6~3.9를, 그리고 동의 정도가 그 다지 높다고 보기 어려운 3.1~3.5사이의 평균 점수를 보인 항목은 6개 항목, 찬성 점수 3.0이하의 항목은 총 7개였다. 검토안에 대한 찬성 점수 결과를 대분류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B1 의복류

{B1류}는 띠를 제외한 한복 및 양복 속옷 또는 내의를 위한 분류로 실질적으로 의복류의 대부분을 포함하며 중분류와 소분류 코드를 포함하여 총 46개의 코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총 28개 항목에 대한 검토안을 제시하였고, 11개의 항목에서 평균 찬성 점수 4.0이상이 산출되어 이들 항목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표 3).

이들 개선의 방향은 물품 명칭의 삭제, 변경, 또는 추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기존 물품 명칭 삭제를 검토안으로 제시한 질문 중 4.0이상의 높은 찬성 점수를 보인 항목들은 [B1-00 기타의 의복]에서 “수중에어로빅용 유니폼”과 〈B1-112 와이셔츠 등〉의 “셔츠블라우스,” 〈B1-42 포대기(유아용)〉, [B1-80 기저귀 및 커버]를 현재의 분류 코드 내 분류 명칭

이나 물품 명칭에서 삭제하는 내용이였다. 본 연구 설문지에 제시된 삭제 이유로는, “수중에어로빅용품 유니폼”의 경우 유사 용도의 [B1-5 수영복]류로 전환 분류할 수 있고, “서츠블라우스”는 블라우스의 일종으로 서츠형 블라우스만 따로 개별 물품명으로 예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현 코드 내 물품명에서 삭제하는 것이 다른 형태의 블라우스류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는 판단이였다. “포대기(유아용)”는 포대기를 제시하고 있는 중분류 [B1-40 잠옷]류의 용도와 무관하고, “기저귀 및 커버”의 경우도 용도상의 비유라기 보다는 [C4 가정용 보건위생용품]에 해당하므로, 이미 특허청의 상기 연구에서도 제안된 바와 같이 의류를 포괄하는 B군보다는 유사기능의 분류인 C군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분류 명칭 또는 물품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B1-111 신사복 등]의 경우, “신사복, 숙녀복”으로 변경하고(찬성 점수 4.0), <B1-115 잠바 등>은 “점퍼”로(4.6), <B1-65 코르셋 등> 아래 “여성용 보디슈트”는 “보디 슈트”로(4.4), <B1-66 팬츠>는 “팬티”로 분류 명칭 변경하는 안에 찬성한다(4.3)고 응답하였다. “신사복 등”을 “신사복, 숙녀복”으로 변경해야 하는 이유로는 현 분류체계는 숙녀복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분류 명칭을 “신사복 등”으로 남길 경우, 숙녀복이 별개의 류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또, 남성용 보디슈트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여성용”라는 표현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B1-66 팬츠>에서 “팬츠”는 남녀 구분없이 짧은 하의 속옷을 분류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목적으로는 “팬츠”보다는 “팬티”가 제시된 개별 물품명들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원래 영어에서 팬티는 여성이나 아동용 속옷을 일컫는데<sup>17)</sup>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남녀 구분없이 짧은 하의 속옷을 일컫는 물품명으로 인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팬티가 팬츠보다 무난한 물품명으로 판단되는데, 이 검토안에 대해 조사 대상자들도 4.3의 적극적인 동의를 표했다.

또, 설문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캐미솔”을

<B1-62 언더셔츠>하에, “브리프”와 “박서”를 <B1-66 팬츠>의 소분류 개별 물품명으로 추가하는 검토안에 각각 4.4와 4.1의 찬성 점수로 동의하였다. 이들 물품을 해당 코드 하에 추가해야 하는 이유는 시장에서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현 코드에는 이들 물품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캐미솔은 가는 어깨끈으로 연결된 여성용 상의 속옷으로 이용되고 있고, 하의 속옷명으로 제시된 “드로어즈, 블루머, 팬티”는 영어권에서는 여성용 속옷 명칭으로 현 분류표에서는 남성용 팬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남성용 하의 속옷 형태를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 때 남성용으로 주종을 이루는 하의 속옷 명칭으로 사각형 브리프와 박서가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위 외 4.0이상의 높은 찬성 점수를 보인 질문 중 물품 분류의 전환에 관한 검토안이 있었다. <B1-115 잠바 등>하에 제시된 “개량도복, 검도복, 태권도복, 유도복, 승마복, 스키복, 등산복 등”의 경우, 운동용도복과 스포츠 레저복의 종류로 그 용도와 형태에 있어 “잠바”와는 거리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조사 대상자들은 이의 분류 전환에 4.4의 점수로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B1류에서 찬성 점수 3.1~3.9를 보인 검토안은 12 항목으로, 그 중에서도 3.6이상의 찬성 점수는 비교적 해당 검토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찬성 점수가 적극적인 수준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 중, <B1-10A 한복>에 “한복조끼”를 추가하는 검토안에 대해 비교적 높은 점수(3.9)로 찬성의 의견이 나타났다. 조끼는 남녀 한복의 대표적 아이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물품분류표에서는 한복조끼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반면, <B1-114 양복조끼>의 경우는 “조끼”로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해당 코드 하에서 “양복조끼”는 양복 정장용 조끼를 포함하여 작업용, 트레이닝용, 낚시용, 방재용 등 다양한 용도와 형태의 조끼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양복조끼”를 “조끼”로 명칭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취지에서 제시된 설문지 검토안에 대해 응답자들을 3.9의 찬성 점수를 보여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분류 [B1-7 생리용 패드지대 등]의 삭제안에



대한 평균 찬성 점수는 3.7로 나타났다. 생리용패드 지지대 즉, 위생(또는 생리)팬티로 불리우는 물품의 외부 디자인은 <B1-66 팬츠>하의 “팬티” 디자인과 유사하므로 동일유사 디자인의 물품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본 연구자의 판단이었다. 또한, <B1-110 외의 또는 상의>에서 “레인코트”의 경우, 상위 분류 [B1-00]의 “우의”와 중복됨으로 검토안에서 삭제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 안은 첫째, 레인코트와 우의 두 물품의 용도와 기능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현 물품분류표 <B1-00 기타의 의복>와 <B1-110 외의 또는 상의>하에서 각각 다른 코드로 제시되어 있고 둘째, “레인코트”는 “오버코트”와 디자인상 유사하기 때문에 굳이 유사디자인의 물품을 동일 코드내에 별도의 개별 물품 명칭으로 제시될 필요가 없다. 또, 레인코트와 우의라는 물품 명칭으로부터 각각의 형태를 추정하여 볼 때, “레인코트”는 길이가 긴 형태로 앞트임이 있는 형태로 유추할 수 있고, 우의의 경우는 코트형, 원피스형, 또는 투피스형을 아우르는 형태로 더 넓게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의가 레인코트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B1-00 기타의 의복]하의 “우의”는 유지하고, <B1-110 외의 또는 상의>에서 “레인코트”를 삭제하는 것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실제로, 특허정보넷<sup>18)</sup>에서 “우의”와 “레인코트”로 등록된 디자인을 검색한 결과, 우의 [B1-00] 코드가 레인코트 <B1-110> 보다 더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B1-910 의복용 부품> 아래 제시된 개별 물품 명칭 “양복용안감”을 삭제하고, <B1-914 의복용 장식구>에서 “골프스윙조절패치”를 삭제, 그리고 <B1-113 스웨터, 폴로셔츠 등>에서 “폴로셔츠”를 삭제하고 티셔츠로 대체하는 검토안에 대해 각각 3.6, 3.7, 3.6의 찬성 점수를 보였다. 골프수위조절패치의 경우, 장식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복용 장식구를 분류하는 소분류 <B1-914> 하에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한 코드 내에 비유사 물품들이 혼재, 분류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개별물품명에서 삭제함으로써 물품분류의 논리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B1-9130 의복용 미끄럼방지구>, <B1-9131

인사이드벨트>, 그리고 <B1-914 의복용 장식구>의 “한복용패치”의 경우 명칭 변경하거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인지되었고, 이들의 찬성 점수는 각각 3.7로 조사되었다.

## 2. B2 복식품류

{B2 복식품류}는 띠를 포함한 의류 중, 손, 발 및 머리 등을 덮는 것을 분류하며, B3 장신구, B4 가방 또는 휴대용 지갑 등과 B5 신발을 제외한다. 총 41개의 개별 코드로 구성된 B2류에서는 2개의 검토안을 제시하였고, 팔커버 관련한 검토안은 3.7, 복대 관련 검토안은 2.9의 찬성 점수가 산출되었다.

<B2-52 팔커버>에는 “머프”와 “토시” 등 팔에 걸쳐지는 물품을 포함하여 “손목밴드, 손목보호대” 등 손목을 위한 물품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별 물품의 성격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팔커버” 보다는 “손목밴드, 팔커버”로 분류 명칭을 변경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찬성 점수는 3.7로, 이는 개선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인지될 수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B2-00 기타의 복식품]의 하류에 <B2-010 복대 등>과 <B2-011 복대>가 반복 제시되어 <B2-010>을 삭제하여도 무관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검토안으로 제시하였으나 찬성 점수는 2.9로 나타났다.

## 3. B3 신변용품류

현행 디자인물품분류표에서 대분류 {B3 신변용품류}는 총 89개의 코드로 구성되어 있고 연구자들은 이중 4개 항목에 대해서 검토안을 제시하였다.

그 중 B3류의 대분류 명칭을 변경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 점수는 3.9로 나타나 개선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지되었다. B3류는 “장식을 위하여 신체에 붙이는 휴대품을 분류”하기 위한 분류로 가방 또는 휴대용 지갑 등은 제외하고 있다. 장식용 휴대품을 분류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구분표에서는 B3류를 “신변용품”으로 명명하고 있다. 따라서 “신변용품”보다는 “장식 신변용품”이라 명명하는 것이 분류의 의도를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자는 <B3-36 왓펜>에 제시된 “의류

용 표딱지"라는 개별 물품명이 업계의 용어와 거리가 있고, 따라서 물품의 용도와 기능을 이해하고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 찬성 점수 3.6을 나타내어 동의하는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추의 경우, 현 분류표에서는 "소매단추"와 "의복용 단추"로 구분하고 각각 [B3-40 팔뚝장신구 및 손가락장신구]와 [B9-10 의복 및 신변품 부품]하에 분류하고 있다. 현 분류표에서 소매단추는 주로 커프스 버튼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소매단추가 비록 장식적 기능을 하지만 [B3-40 팔뚝장신구 및 손가락 장신구]하에 분류할만한 독립적 물품의 장신구라고 보기에는 거리가 있고 즉, 의복과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B9-10 의복 및 신변품부품]하의 <B9-111 의복용 단추>로 분류 전환하는 것이 분류체계의 논리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응답자들의 찬성 점수는 3.1 수준으로 이 안에 적극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최근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포켓치프를 [B3-5 손수건]하의 개별 물품으로 제시하는 내용을 제안하였으나 전문가 그룹의 찬성 점수는 3.4로 적극적인 찬성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였다.

#### 4. B4 가방 또는 휴대용 지갑류 등

총 15개의 코드로 구성된 B4류에서 3개의 검토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들의 찬성 점수는 3.0~3.4으로 적극적인 찬성으로 해석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었다.

B4류는 가방 또는 휴대용 지갑류를 포함하는 분류이다. B4의 하류 분류 중 하나인 소분류 <B4-4C 가방 또는 휴대용 지갑>에서는 "쇼핑백"과 "포장용 가방"의 간이 가방형 디자인을 개별물품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간이 가방류는 B군 의복 및 신변품에 속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렵고, 또 [F4-40 포장용 포대]로 전환 분류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B4-4C>를 B군에서 삭제할 것을 검토안으로 제시하였으나, 찬성 점수는 3.0 보통으로 조사되었다. <B4-92 쇼핑백용 손잡이>의 경우도 위와 같은 이유에서 B군에서 삭제를 제안하였으나 찬성 점수 3.1로

나타났다.

<B4-94 가방용자물쇠 또는 휴대용 지갑 자물쇠> 내의 개별 물품 명칭 "가방용파스너(FASTNER)"에서 파스너는 '체결구'의 영어식 표현으로 동일 분류 수준에서 제시된 "가방체결구"는 "가방체결구(FASTNER)"라는 하나의 물품 명칭으로 변경, 제시할 수 있을 판단하였다. 이 검토안에 대한 찬성 점수는 3.4로, 적극적인 찬성이라 하기는 보다는 개선의 필요성이 인지된 수준 정도이다.

#### 5. B5 신발류

신발 및 그 관련 물품을 분류하는 53개 코드의 B5류와 관련하여 총 2개의 검토안을 제시하였다. 응답자들은 [B5-10 구두 또는 운동화]에서 "구두"와 "운동화"는 각각 독립 코드로 분리하고, [B5-60 발가락센들]을 [B5-50 센들]하에 개별적인 센들의 종류 형태로 제시한다는 검토안에 각각 3.9의 찬성 점수로 개선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구두 또는 운동화를 독립 코드로 분리해야 하는 이유로는 "구두"와 "운동화"는 서로 디자인이 독립적이고, B5류 신발 출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물품의 용도와 실무적인 편리와 목적에 따라 분리할 필요가 있다.

중분류 [B5-50 센들]하에는 <50A 스트랩형>, <50B 앞트임형>, <50C 앞막임형>으로 센들을 형태별로 제시하고 있다. 현행 물품구분표에서 발가락형 센들의 경우, [B5-50]과 분리하여 [B5-60 발가락센들]로 따로 분류하고 있는데, "발가락센들"은 센들의 일종으로 [B5-50]하에 스트립, 앞트임, 앞막힘형에 연속하여 분류하는 것이 분류의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6. B9류 의복 및 신변용품, 범용부품 및 부속품

B9류는 의복 및 신변용품, 범용부품 및 부속품을 분류하고 있다. 총 23개의 물품분류 코드 중, 1개 코드에 해당하는 검토안을 설문지에 제시하였다. 소분류 <B9-130 의복 및 신변용품 연결금속구>에는 "자

〈표 3〉 디자인 물품구분표 B군 의복 및 신변용품 분류 검토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현행 분류체계		검토안	
			형태분류	물품의 명칭	내용	찬성점수
B1 의복	B1-00		기타의 의복	목욕용가운,비치가운,수중에어로빅용유니폼 <sup>1</sup> ,예복,우의,유아복,잠수복 <sup>2</sup> ,제킨,종교의식용가운,갑옷	1. "수중에어로빅용유니폼"을 현 코드에서 삭제한다.	4.4
					2. "잠수복"을 현 코드에서 삭제한다.	3.1
	B1-10	B1-10A	한복	마고자,한복바지,한복저고리,한복치마,두루마기 <sup>3</sup>	3. "한복조끼"를 추가한다.	3.9
		B1-110	외의 또는 상의	레인코트 <sup>4</sup> ,오버코트,윈피스	4. "레인코트"를 삭제한다.	3.6
		B1-111	신사복 <sup>5</sup> 등	신사복, 신사복상의, 재킷, 투피스	5. "신사복 등"을 "신사복, 숙녀복"으로 명칭 변경한다.	4.0
		B1-112	와이셔츠 등	블라우스,셔츠블라우스 <sup>6</sup> ,와이셔츠	6. "셔츠블라우스"를 삭제한다.	4.1
		B1-113	스웨터,폴로셔츠 <sup>7</sup> 등	목티,스웨터,카디건(cardigan),티셔츠	7. "폴로셔츠"를 삭제하고 "티셔츠"로 대체한다.	3.6
		B1-114	양복조끼 <sup>8</sup>	안건의복,양복조끼,응원용조끼,작업용조끼,트레이닝조끼,낚시용조끼,방재용조끼,스키연습용조끼,스트레칭운동기구용조끼	8. "양복조끼"를 "조끼"로 명칭 변경한다.	3.9
		B1-115	잠바 <sup>9</sup> 등 <sup>10</sup>	개량도복*,검도복*,등산복,스키복*,승마복*,야구복*,운동복,운동용상의,유도복,작업복,작업용상의,잠바,태권도복*	9. "잠바"는 표준어 "점퍼"로 변경한다.	4.6
					10. 개별 물품으로 포함된 "개량도복, 검도복, 태권도복, 유도복, 승마복, 스키복, 등산복 등"은 운동용 도복과 스포츠 레저복의 종류로, 그 용도와 형태에 있어 "잠바"와는 거리가 있다.	4.4
		B1-121	바지	바지,반바지,운동용바지, <sup>11</sup>	11. "운동용 바지"를 삭제한다.	2.4
		B1-30		에이프런 등 <sup>12</sup>	턱받이(유아용),1회용네프킨	12. [B1-30 에이프런 등]을 B군에서 삭제한다.
	B1-40	B1-42	포대기(유아용) <sup>13</sup>	포대기	13. "포대기(유아용)"을 B군에서 삭제한다.	4.3
	B1-5		수영복 <sup>14</sup>	수영복,수영팬티	14. [B1-5 수영복]을 <운동복>으로 변경한다.	3.4
	B1-60	B1-62	속옷 언더셔츠	пам받이용내의,러닝셔츠,슈미즈,언더셔츠 <sup>15</sup>	15. "캐미솔"을 추가한다.	4.4
		B1-65	코르셋 등	거들,여성용 보디 슈트(woman's body suit) <sup>16</sup> ,올인원,웨이트니퍼,코르셋	16. "여성용 보디 슈트"를 "보디 슈트"로 변경한다.	4.4
		B1-66	팬츠 <sup>17</sup>	드로어즈,블루머,팬츠,팬티 <sup>18</sup>	17. "팬츠"를 "팬티"로 명칭 변경한다. 18. "브리프, 박서"를 추가한다.	4.3 4.1
	B1-70	B1-67	바지내의, 타이즈 <sup>19</sup> 등	바디스타킹 <sup>20</sup> ,레깅스,바지내의,타이즈,팬티스타킹 <sup>20</sup> ,체중조절용пам복,헬스바디웨어	19. "타이즈"를 삭제한다. 20. 바디스타킹, 타이즈, 팬티스타킹을 삭제한다	2.6 2.4
		B1-7	생리용 패드지지대 등 <sup>21</sup>	생리용패드지지대,생식기보호구,위생팬츠	21. [생리용 패드지지대 등]을 삭제한다.	3.7
		B1-80	기저귀 및 기저귀커버 <sup>22</sup>	기저귀	22. [B1-80 기저귀 및 커버]를 삭제한다.	4.0
B1-90		B1-910	의복용 부품	옷고름,브래지어끈, 브래지어용와이어, 브래지어섬,산모용가슴패	23. "양복용안감"을 개별 물품 명칭에서 삭제한다.	3.6

디자인보호법 물품구분표상 B군 의복 및 신변용품 분류체계 개선안

				드, 양복용안감 <sup>23</sup> , 의류용접합테이프(찍찍이), 의복부착용지압밴드, 잠수복용관절부지지대, 펜티보호커버, 피복재봉선이음밴드		
		B1-912	의류용 표시구 <sup>24</sup>	의류용표시구	24. “의류용표시구”를 <라벨지>로 명칭을 변경한다.	2.9
		B1-9130	의복용 미끄럼방지구 <sup>25</sup>		25. “의복용 미끄럼방지구”의 명칭을 변경한다.	3.7
		B1-9131	인사이드벨트 <sup>26</sup>	인사이드벨트, 인사이드벨트지	26. “인사이드벨트”의 명칭을 변경한다.	3.7
		B1-914	의복용 장식구	골프스윙조절패치 <sup>27</sup> , 의복용가슴장식구, 한복용팻치 <sup>28</sup>	27. 골프스윙조절패치”는 삭제한다.	3.7
					28. “한복용팻치”의 명칭은 물품의 기능 및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3.7
B2 복식품	B2-00	B2-010	복대 등 <sup>29</sup>		29. [B2-010 복대 등]을 삭제한다.	2.9
	B2-50	B2-52	팔커버(*토시) 등 <sup>30</sup>	머프(*MUFF), 소매장식, 손목밴드, 손목보호대, 운동용 팔꿈치싸개, 토시	30. “팔커버”를 “손목밴드, 팔커버”로 변경한다.	3.7
B3 신변용품 <sup>31</sup>					31. [B3 신변용품]을 “장식 신변용품”으로 변경한다.	3.9
	B3-30	B3-36	왓펜(*Wappen, 형견휘장)	아플리케, 왓펜, 의류용표떡지 <sup>32</sup>	32. “의류용표떡지”의 명칭을 변경한다.	3.6
	B3-40	B3-42	소매단추 <sup>33</sup>	소매단추, 커프스버튼	33. [B3-42 소매단추]를 [B9-111 의복용 단추]로 분류 전환한다.	3.1
	B3-5		손수건(*handkerchief)	손수건 <sup>34</sup>	34. “포켓치프”를 추가한다.	3.4
	B4-4	B4-4C <sup>35</sup>	가방 또는 휴대용 지갑(간이가방형)	쇼핑백, 포장용가방	35. [B4-4C]를 B군에서 삭제한다.	3.0
B4 가방 또는 휴대용 지갑 등		B4-92	가방용 손잡이 또는 휴대용 지갑 손잡이	가방용손잡이, 쇼핑백용손잡이 <sup>36</sup>	36. “쇼핑백용 손잡이”를 B군에서 삭제한다.	3.1
	B4-90	B4-94	가방용 자물쇠 또는 휴대용 지갑 자물쇠	가방걸착구, 가방용장식고리, 가방용장식메달, 가방용자물쇠, 가방용패스너(FASTNER) <sup>37</sup> , 가방체결구	37. “가방용패스너(FASTNER)”를 <가방체결구(FASTNER)>로 명칭을 통일한다.	3.4
B5 신발	B5-10		구두 또는 운동화 <sup>38</sup>		38. [B5-10 구두 또는 운동화]에서 “구두”와 “운동화”는 각각 독립 코드로 분리한다.	3.9
	B5-60		발가락샌들 <sup>39</sup>	발가락샌들	39. [B5-60 발가락샌들]을 [B5-50 샌들]하에 병합한다.	3.9
B9 의복 및 신변용품, 범용 부품 부속품	B9-10	B9-130	의복 및 신변용품 연결금속구	가방용버클, 구두용버클, 시계밴드용버클, 의복벨트용버클, 의복용연결쇠, 의복용물림쇠, 자동차용 시트벨트 연결구, 자동차용 안전벨트 버클, 작업벨트용 버클 <sup>40</sup>	40. “자동차용 시트벨트 연결구, 자동차용 안전벨트 버클, 작업벨트용 버클”을 현 개별물품 예시에서 삭제한다.	3.9

주: 1~40은 검토안 문항

〈표 4〉 B군 일부심사대상 의복류 디자인물품구분 체계 개선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개별 물품 명칭	비고	
B1	B1-00	기타의 의복	목욕용가운,비치가운,수중애어포박용유니폼,예복,우의, 유아복,잠수복,제킨,종교의식용가운,갑옷		
	B1-10	B1-10A	한복	마고자,한복바지,한복저고리,한복치마,두루마기,한복조끼*	
		B1-110	외의 또는 상의	래인코트,오버코트,윈피스	
		B1-111	신사복 등 <sup>-&gt;신사복, 숙녀복)</sup>	신사복, 신사복상의, 재킷, 투피스	
		B1-112	와이셔츠 등	블라우스,셔츠블라우스, 와이셔츠	
		B1-113	스웨터,폴로셔츠 <sup>7-&gt;티셔츠</sup> 등	목티,스웨터,카디건(cardigan),티셔츠	
		B1-114	양복조끼 <sup>-&gt;조끼</sup>	안전의복,양복조끼,응원용조끼,작업용조끼,트레이닝조끼,낚시용조끼,방재용조끼,스키연습용조끼,스트레칭운동기구용조끼	
		B1-115	잠바 <sup>-&gt;점퍼</sup> 등	캐랑도복,검도복,등산복,스키복,승마복,야구복,운동복, 운동용상의,유도복,작업복,작업용상의,잠바,태권도복	
	B1 <sup>■</sup>	운동복	캐랑도복,검도복,등산복,스키복,승마복,야구복,운동복, 운동용상의,유도복,태권도복	〈B1-115〉 중 형 태상 점퍼와 이질 적인 물품 분리	
	B1-40	B1-42	포테키(유아용)	포테키	
	B1-60	B1-62	언더셔츠	담받이용내의,러닝셔츠,슈미즈,언더셔츠,캐미솔*	
		B1-65	코르셋 등	거들,여성용 보디 슈트(woman's body suit),올인원,웨이스트니퍼,코르셋	
		B1-66	팬츠 <sup>-&gt;팬티</sup>	드로어즈,블루머,팬츠,팬티,브리프*박서*	
	B1-7	생리용 패드차 자태 등	생리용패드차자태,생식기보호구,위생팬츠		
	B1-80	키저귀 및 키자 귀카바	키저귀		
B1-90	B1-910	의복용 부품	웃고름, 브래지어끈, 브래지어용와이어, 브래지어심, 산모용가슴패드, 양복용안감, 의류용접합테이프(찍찍이), 의복부착용지압밴드, 잠수복용관절부지?測? 팬티보호커버, 피복재봉선이음밴드		
	B1-9130	의복용 미끄럼 방지구 <sup>-&gt;의복용 물 림장치</sup>			
	B1-9131	인사이드벨트 <sup>-&gt;의복용 속벨트</sup>	인사이드벨트,인사이드벨트지		
	B1-914	의복용 장식구	골프스윙조절패차,의복용가슴장식구,한복용팻치 <sup>-&gt;한복용 장식팻치</sup>		
B2	B2-50	B2-52	팔커버(*토시) 등 <sup>-&gt;손목밴드, 발피커</sup>	머프(*muff),소매장식,손목밴드,손목보호대,운동용팔꿈치싸개,토시	
B3	B3-30	B3-36	왓펜(*Wappen, 형겔휘장)	아플리케,왓펜,의류용 표딱지 <sup>-&gt;의류용 장식팻치</sup>	
B5	B5-10	구두 또는 운동화			

	B5 <sup>■</sup>	운동화		[중분류] 추가
		B5- <sup>■</sup> 발가락샌들	발가락샌들	[B5-60]을 <소분류>로 전환
	B5-60	발가락샌들	발가락샌들	
B9	B9-10	B9-130 의복 및 신변용품 연결금속구	가방용버클, 구두용버클, 시계밴드용버클, 의복벨트용버클, 의복용연결쇠, 의복용물림쇠, 자동차용 시트벨트 연결구, 자동차용 안전벨트 버클, 작업벨트용 버클	

주: ■분류 추가, —삭제, \*개별 물품 추가, --)변경

자동차용 시트벨트 연결구, 자동차용 안전벨트 버클, 작업벨트용 버클” 등의 개별 물품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들 개별물품을 현 코드 “의복 및 신변용품 연결금속구”하의 개별물품 예시에서 삭제하는 안에 대한 찬성 점수는 3.9로 나타났다. B9류가 의복과 신변용품 및 관련 범용품 부속품으로 제한하고 있음에 반해 해당 물품들은 의복 신변용품 및 관련 부속품으로 보기 어렵다. 또, 이들 물품들은 {M3 나사, 못, 개폐금속물 등}이나 {K9 산업용 기계기구 범용부품 및 부속품}으로 전환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B군에 포함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이상의 결과에 토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찬성 점수 3.6이상의 27개 검토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한 것으로 해석하고, 이들을 수용하여 B군 의복 및 신변용품류 디자인물품 분류체계 개선안으로 제시하였다(표 4). 분류 전환 및 조정의 경우, 현행 디자인 물품분류체계가 택하고 있는 일원화방식 즉, 동일 대분류 내의 모든 물품은 모두 일부심사 또는 심사대상으로 하는 방식을 유지하여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 V. 결론

오늘날 패션 시장에서는 디지털 기기와 사이버 네트워크 등의 혁명적 발달로 디자인 카피가 용이하게 되었고, 복제 가품이 정품으로 인식될 만큼 기술이 평준화되어 디자인의 법적 권리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의복류 B군의 디자인일부심사제도 이용율이 매우 높고 이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 및 정확한 관련 통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을

고려할 때, B군 물품분류체계의 적합성은 매우 중요하다.

현행 B군 디자인물품분류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요약하면, 크게 유사 또는 비유사 물품이 상이하거나 동일한 류에 분류되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분류표에 제시된 물품명이 제한적이어서 근래의 시장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고, 이는 출원 시 물품 코드 선택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 분류 또는 개별 물품 명칭이 물품의 용도, 기능, 형태 인지를 어렵게 하거나 업계의 용어와 거리가 있는 점, 그리고 이들 명칭을 성(性)별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디자인의 독립성이나 시장의 트렌드를 참작하여 디자인보호법의 법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성 구분 여부가 설정되어야 하나 이러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모순을 개선하기 위한 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별 물품의 삭제 또는 추가, 분류 전환과 조정 및 개별물품의 명칭 변경 등을 제안하였는데, 이러한 개선안은 기존의 동일 대분류 아래의 모든 물품은 일부심사 또는 심사대상으로 통일하는 일원화 방식을 고수하여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그러나 제안된 개선안은 물품의 용도와 형태 등의 분류 기준에서 일관성과 물품 명칭의 정확성 제고를 피하여 논리적 결함은 축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개별 물품의 분류가 전환 또는 조정된 경우 새로운 물품 코드가 생성되거나 삭제되고, 동일 물품이 개선 전후의 통계에서 다른 코드로 분류될 수 있어 전과 후의 사정을 정확히 비교 분석하는 별도의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연구자가 본 조사를 개시한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국제 디자인물품 분류 기준인 로카르노 분류를 도입하여 연내에 국내 분류와 병용을 계획함에 따라 한국분류 개선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본질적인 회의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자의 이러한 회의는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확신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확신은 한국분류가 로카르노 국제분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분류체계로서,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유효한 분류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과거 특허와 상표등록출원 시에 사용되던 국내분류가 국제분류로 대체되어 현재는 국제분류만 사용되고 있듯이 장기적으로 볼 때 디자인분야에서도 같은 경향이 예상되지만, 특허, 상표와 같은 다른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디자인분야에서는 국제분류가 심사의 효율이 낮다고 인지되고 있는 반면, 한국분류는 심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이 인정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한국분류를 국제분류와 더불어 병용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영국과 호주는 로카르노분류를 더 세분화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출원인이 표기할 때는 로카르노 체계를 따르고, 심사관이 선행공지디자인을 검색할 때는 우리나라 분류체계에 따라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즉, 로카르노 분류체계가 기능에 중점을 두어 분류하고 있어 디자인 권리의 보호 측면에서 제품의 수명이 짧아지고 디자인 권리에 대한 시각이 확대되고 있는 매우 유효한 분류 틀이 될 것임은 틀림없으나, 심사의 효율성 측면에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보완책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1) 양종윤 (2006), 디자인 무심사등록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33-34.
- 2) 특허청 (2006), *디자인 무심사 등록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pp. 107-109.
- 3) "통계/동향/분석 지식재산권 통계-물품군별 디자인 출원건수", 자료검색일 2013. 8. 6,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3041&catmenu=m02\\_05\\_01](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3041&catmenu=m02_05_01)
- 4) 진선태 (2011), 디자인과 디자인보호분야 사이의 통념 차이, *디자인학연구*, 24(3), p. 255.

- 5) 산업디자인 물품분류의 국제적 통일을 위한 협정으로 정식 명칭은(Locarno Agreement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Industrial Designs)이다.
- 6) A 제조식품 및 기호품, B 의복 및 신변품, C 침구, 조리용구 등 생활용품, D 주택설비용품, E 취미오락용품 및 운동경기용품, F 사무용품 및 판매용품, 광고용구, G 운수 또는 운반기계, H 전기전자기계기구 및 통신기계기구, J 일반기계기구, K 산업용기계기구, L 토목건축용품, M 직물지 등 기타의 기초제품, N 타군에 속하지 않는 기타의 물품.
- 7) 특허청 (2011), *헤이그 협정 및 로카르노 분류 도입에 따른 디자인 무심사 품목 제조정 방안 연구*, p. 97.
- 8) *Ibid.*, pp. 124-125.
- 9) 특허청 (2006), *op. cit.*, pp. 107-109.
- 10) 2012 물품구분표(특허청 고시 2012-35)에서는 B1-42로 분류됨.
- 11) 2012 물품구분표상 B4-4C로 분류됨.
- 12) 2012 물품구분표상 B1-67로 분류됨.
- 13) 2012 물품구분표상 B3-36로 분류됨.
- 14) 특허청 (2006), *op. cit.*, p. 117.
- 15) 특허청 (2006), *op. cit.*, p. 107.
- 16) 2012 물품구분표상 B3-34로 분류됨.
- 17) 다음 어학 영영사전, "panty," 자료검색일 2014. 1. 20,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eew000049483&q=panty>
- 18) 특허정보넷, 자료검색일 2014. 2. 27, <http://kdtj.kipris.or.kr/kdtj/searchLogina.do?method=loginDG&checkPot=Y>